청계 노르웨이숲 무순위(사후) 5차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55-0807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중구는 '25.10.16.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본 주택은 '25.10.15.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해당하여 비규제지역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단,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 기준 적용)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최초당첨자발표일(25.05.12.)로부터 3년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	25.04.18.(금)	26.01.05.(월)	26.01.12.(월)	26.01.15.(목)	26.01.23.(금)~26.01.24.(토)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의 무순위 청약자격을 확인하시어 당첨이 무효처리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위 청약 가능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일 주택(청계 노르웨이숲)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일 주택(청계 노르웨이숲)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O		X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1.05.(월)**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5910266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4.18.(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5000135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 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 정	26.01.12.(월)	26.01.15.(목)	26.01.23.(금)~26.01.24.(토)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운영시간 10:00~17:00) 견본주택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88, 1층(성수동1가, 노벨빌딩)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신청은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서울특별시 중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 **2025.05.12.(월)**로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756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6층, 지상 20층 4개동 총 404세대(임대 51세대, 조합 256세대) 중 일반분양 97세대 중 잔여 46세대

■ **입주시기** : 2028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5910266	01	039.6950	39	46	101	611, 705, 807, 808, 810, 812, 903, 1010, 1011, 1012, 1103, 1112, 1202, 1210, 1211, 1410, 1412, 1510, 1511, 1512, 1610, 1611, 1612, 1703, 1711, 1712, 1812
					104	605, 701, 802, 804, 806, 807, 903, 1005, 1006, 1103, 1104, 1106, 1202, 1206, 1207, 1407, 1707, 1805, 1907
	합 계			**46**	-	

■ **공급금액 표** (단위 : 세대,원)

약식표기	공급세대	동	층구분	해당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2026-02-26	2026-02-26	2026-05-26	2027-04-26	2027-07-26	2027-12-28	
39	46	101동, 104동	6~7층	4	192,029,587	536,230,413	728,260,000	20,000,000	52,826,000	72,826,000	72,826,000	72,826,000	72,826,000	72,826,000	72,826,000	218,478,000
			8~12층	26	192,029,587	546,230,413	738,260,000	20,000,000	53,826,000	73,826,000	73,826,000	73,826,000	73,826,000	73,826,000	73,826,000	221,478,000
			13~17층	13	192,029,587	556,230,413	748,260,000	20,000,000	54,826,000	74,826,000	74,826,000	74,826,000	74,826,000	74,826,000	74,82600	224,478,000
			18~19층	3	192,446,528	568,673,472	761,120,000	20,000,000	56,112,000	76,112,000	76,112,000	76,112,000	76,112,000	76,112,000	76,112,000	228,336,000

※중도금 일정은 당사의 일정 조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 주택형별 별도계약품목의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임.

※ 주택형별 별도계약품목의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임.

1) 가전기기

(단위 : 원 / VAT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품목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체결시	입주시	
39	스마트 복합 환풍기	욕실	700,000	70,000	630,000	* 힘펠 휴젠뜨3 FHD3-C150P

※ 상기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옵션금액은 추가 선택품목이 설치됨에 따라 시공되지 않는 기본품목의 감소되는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냉장고장 선택품목 옵션금액은 냉장고 외 추가로 시공되는 키큰서랍장 설치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스타일러 선택품목 옵션은 가구/마감재 옵션 선택품목 중 침실3(드레스룸형) 벽판넬 조명형 시스템 선반가구 옵션 미선택 시, 별도의 스타일러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및 가구마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상기 스마트 복합 환풍기 선택품목 옵션선택 시, 기본 시공되는 환풍기는 제공되지 않으며, 각각의 설치위치는 상이합니다.

2) 가구/마감재 옵션

(단위 : 원 / VAT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품목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체결시	입주시	
39	광폭마루(390*790*7.5T)	거실,주방,복도,침실 바닥	150,000	15,000	135,000	* 미선택 시, 95*800*7.5T 규격의 마루가 설치됩니다.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 상판 + 벽체	1,400,000	140,000	1,260,000	* 미선택 시, 주방 상판은 MMA급 인조대리석으로, 주방 벽체는 도기질타일(300*600)로 마감됩니다.

	라인조명	주방	280,000	28,000	252,000	
39	[아메리칸스탠다드] 비데일체형양변기	욕실	600,000	60,000	540,000	* 미선택 시, 기본형 양변기(대림통상) + 비데가 설치됩니다.

※ 상기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유무에 따라 천장 몰딩 및 가구의 형태나 규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데일체형양변기 옵션 선택시 기본형에서 제공되는 일반 비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옵션금액은 추가 선택품목이 설치됨에 따라 시공되지 않는 기본품목의 감소되는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새마을금고	9002-2058-0174-3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지사

※ 시스템 에어컨, 주방가구 등 타입별 계약금이 상이한 유상옵션 품목이 있어, 계약 전 반드시 계약금 및 계약조건, 납부일정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 지정된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임)
- 추가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빌트인 가구 매립 시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빌트인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당사가 별도로 통지하는 계약체결일정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플러스 옵션 유형, 제품 등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 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 시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 불가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1.15.(목) ~ 2026.01.24.(토)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1.15.(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예비입주자)서류 제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서류 제출 안내

- **당첨자 서류제출 일시 : 2026.01.23.(금)~2026.01.24.(토) 10:00 ~ 17:00**
- **계약시 구비서류 :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6.01.05.(월)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 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본인 계약 시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발급용 (발급용도: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되어있는 경우(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참고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제출할 수 있음. 이하 같음)
	주민등록표초본(전체발급)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변동이력이 있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해외근로자 (단신부임)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 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재직증명서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등(①,②모두 반드시 제출)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및 미성년자녀	• 세대원 및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확인 ※제출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 할 수 있음)
	주민등록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 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위임장	당첨자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 관련 지자체 공문,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26.01.25.(일) 10:00까지 입장완료 후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26.01.25.(일)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7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참고사항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본 아파트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였으나,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의 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노동조합의 파업 및 태업, 원자재 수급불균형, 문화재 및 암반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용검사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위탁사,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옥탑부 디자인, 주동/창호형태, 벽체마감, 외벽색상, 디테일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됨.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 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도로, 완충녹지, 공원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위탁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중도금 대출,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함.
- 본 사업지 토지는 사용승인 시 법령에 따른 확정측량 등으로 인해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고, 세대별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	시공업체
상호명	황학동 청계지역주택조합	주식회사 유림 E&C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88, 1층(성수동1가, 노벨빌딩)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7, 지하1층 101호
사업자등록번호	417-82-84766	605-81-89115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청계노르웨이숲.com)**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88, 1층(성수동1가, 노벨빌딩)**

■ **분양 문의 : 1555-0807**

8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용 안내

■ 사업계획변경승인서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승인서

사 업 구 분	주택건설사업 변경승인			
승 인 번 호	2022-도심재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상 호	황학동청계지역주택조합	등 록 번 호	417-82-84766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김지현	생 년 월 일	-	
영업소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88, 1층(성수동1가, 노벨빌딩)			
공동사업주체	회사명	㈜유림이엔씨	대표자	손형관
	법인등록번호	180111-0635855		
	영업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7, 지하1층 101호(전포동, 서면더블루에스 지하1층)		
대 지 위 치	서울시 중구 황학동 1756일대	대지면적(㎡)	6,068.6	
건축면적(㎡)	3,419.113	건 폐 율(%)	56.34	
연 면 적(㎡)	58,749.265	용 적 률(%)	608.71	
동수(주/부)	공동주택 4개동 등	세 대 수	404세대	
주 택 형 별	아파트	총 사 업 비	238,641,863,628원	
착공예정일	2025-01-20	사 용 검 사 예 정 일	2028-07-19	

동 고유번호	동 명칭 및 번호	연면적(㎡)	동 고유번호	동 명칭 및 번호	연면적(㎡)
1	101동	9,539.281	2	102동	4,125.785
3	103동	7,129.102	4	104동	5,889.229
5	공공업무시설	1,746.696	6	근생(상가1)	3,267.104
7	근생(상가2)	4,267.504	8	관리동	282.705
9	노인정	225.575	10	보육시설	225.023
11	작은도서관	131.202	12	지하주차장(상가)	2,318.514
13	지하주차장(공동주택)	18,967.883	14	지하주차장(업무)	633.662

변 경 사 항	주차 램프 선형 조정, 발전기실 등 면적 조정, 세대 및 코어 등 위치 조정, 창호 및 마감재 변경 등 시공성 및 편의성 개선을 건축설계 변경

「주택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또는 변경승인)합니다.

2025년 12월 4일

중구청장

210㎜×297㎜[백상지(80g/㎡)]

■ 설계 개요

■ 설 계 개 요

대지위치	서울시 중구 황학동 1756번지 외 47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용도	공동주택, 근.생. 공공업무시설					
구역면적	구분	면 적 (㎡)	비고	지구단위계획사항		
	전체면적	6,256.00		용적률(%)	전체	700%이하
	도로	187.40		건폐율(%)	60%이하	
	실사업부지	6,068.60		최고높이	63m이하	

구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	
대지면적	6,068.60			
건축면적	3,418.293	3,419.113	0.820	증가
지상층연면적	36,944.031	36,940.339	(3.692)	감소
지하층연면적	21,563.156	21,808.926	245.770	증가
연면적	58,507.187	58,749.265	242.078	증가
용적률	608.77%	608.71%	-0.06%	감소
건폐율	56.33%	56.34%	0.01%	증가
건물규모	지하6층, 지상20층 (63m이하)			

변경내용		
	설계개요	- 연면적 증가 : 102동, 103동 코어 및 단위세대 측벽조정에 따른 평면조정, 정화조 관리층면적추가, 발전기실 규모확대, 주차램프 선형조정
	단위세대, 동평면도	- 세탁실 계획변경 및 수전위치 변경, 주방PD신설, 보일러 위치조정 등 (편의성 개선을 위한 변경) - 욕실벽체 변경 : UBR공법에서 건식벽체로 변경 (시공성 개선 및 하자요인 개선) - 주방창, 침실WD, 욕실ABS문, 발코니PD 등 창호높이 조정 (마감고려) - 102동, 103동 코어 및 단위세대 측벽조정에 따른 평면조정 (시공성 개선 및 안정성고려)
	주단면도, 코어상세도	- 최상층 단열재 : 외부단열재 삭제, 내부단열재 THK100에서 200으로 변경(시공성 개선 및 안정성고려) - 59C형 : 주방PD신설(코아부분)
	지하층평면도, 기타	- 주차램프 선형조정, 집수정추가설치, 정화조 관리층 공간분리, 발전기실 공간 추가확보 - 지하주차장 바닥마감 변경(폴리우레아 에서 에폭시코팅) - 보육시설, 작은도서관 : 102동, 103동 코어 이동으로 인한 면적변경

■ 면적변동표

□ 설계변경에 따른 면적 변동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공동주택	39	39.695	58.002	99.631	10.1545	39.695	58.002	99.822	10.1325	
	59A	59.986	81.111	144.021	15.3452	59.986	81.113	144.312	15.3119	
	59B	59.985	82.621	145.530	15.3449	59.985	82.624	145.821	15.3117	
	59C	59.799	80.920	143.634	15.2973	59.799	80.928	143.929	15.2642	
	59D	59.842	82.305	145.064	15.3083	59.842	82.308	145.355	15.2752	
	59E	59.799	80.920	143.634	15.2973	59.799	80.928	143.929	15.2642	
상가	A동 101호	33.250	48.918	63.195	6.5548	33.250	48.925	63.980	6.6089	
	102호	30.610	45.034	58.177	6.0344	30.610	45.040	58.900	6.0842	
	103호	55.550	81.727	105.578	10.9510	55.550	81.738	106.890	11.0414	
	104호	57.570	84.699	109.417	11.3492	57.570	84.710	110.777	11.4429	
	105호	57.570	84.699	109.417	11.3492	57.570	84.710	110.777	11.4429	
	106호	59.590	87.671	113.256	11.7474	59.590	87.682	114.664	11.8444	
	107호	28.305	41.643	53.796	5.5800	28.305	41.649	54.465	5.6260	
	108호	27.540	40.518	52.342	5.4291	27.540	40.523	52.993	5.4740	
	109호	31.518	46.370	59.903	6.2134	31.518	46.376	60.647	6.2647	
	110호	42.180	62.056	80.167	8.3152	42.180	62.065	81.163	8.3839	
	111호	50.370	74.106	95.733	9.9298	50.370	74.116	96.922	10.0118	
	112호	51.330	75.518	97.557	10.1190	51.330	75.528	98.770	10.2026	
	A동 201호	45.045	66.271	85.612	8.8800	45.045	66.280	86.676	8.9533	
	202호	54.450	80.108	103.487	10.7341	54.450	80.119	104.773	10.8227	
	203호	56.430	83.021	107.250	11.1244	56.430	83.033	108.583	11.2163	
	204호	56.430	83.021	107.250	11.1244	56.430	83.033	108.583	11.2163	
	205호	58.410	85.934	111.013	11.5148	58.410	85.946	112.393	11.6098	
	206호	31.290	46.035	59.469	6.1684	31.290	46.041	62.209	6.2193	
	207호	29.055	42.747	55.222	5.7278	29.055	42.752	55.908	5.7751	
	208호	30.545	44.939	58.054	6.0215	30.545	44.945	55.775	6.0713	
	209호	30.694	45.158	58.337	6.0509	30.694	45.164	59.062	6.1009	
	210호	41.040	60.379	78.000	8.0905	41.040	60.387	78.970	8.1573	
	211호	48.970	72.046	93.072	9.6538	48.970	72.056	94.229	9.7335	
	212호	48.450	71.281	92.084	9.5513	48.450	71.291	93.228	9.6301	
	213호	40.990	60.306	77.905	8.0806	40.990	60.314	78.873	8.1474	
	A동 301호	45.045	66.271	85.612	8.8800	45.045	66.280	86.676	8.9533	
	302호	54.450	80.108	103.487	10.7341	54.450	80.119	104.773	10.8227	
	303호	56.430	83.021	107.250	11.1244	56.430	83.033	108.583	11.2163	
	304호	56.430	83.021	107.250	11.1244	56.430	83.033	108.583	11.2163	
	305호	58.410	85.934	111.013	11.5148	58.410	85.946	112.393	11.6098	

	306호	31.290	46.035	59.469	6.1684	31.290	46.041	62.209	6.2193	
	307호	29.055	42.747	55.222	5.7278	29.055	42.752	55.908	5.7751	
	308호	30.545	44.939	58.054	6.0215	30.545	44.945	55.775	6.0713	
	309호	30.694	45.158	58.337	6.0509	30.694	45.164	59.062	6.1009	
	310호	41.040	60.379	78.000	8.0905	41.040	60.387	78.970	8.1573	
	311호	48.970	72.046	93.072	9.6538	48.970	72.056	94.229	9.7335	
	312호	48.450	71.281	92.084	9.5513	48.450	71.291	93.228	9.6301	
	313호	40.990	60.306	77.905	8.0806	40.990	60.314	78.873	8.1474	
	A동 401호	45.045	66.271	85.612	8.8800	45.045	66.280	86.676	8.9533	
	402호	54.450	80.108	103.487	10.7341	54.450	80.119	104.773	10.8227	
	403호	56.430	83.021	107.250	11.1244	56.430	83.033	108.583	11.2163	
	404호	56.430	83.021	107.250	11.1244	56.430	83.033	108.583	11.2163	
	405호	58.410	85.934	111.013	11.5148	58.410	85.946	112.393	11.6098	
	406호	31.290	46.035	59.469	6.1684	31.290	46.041	62.209	6.2193	
	407호	29.055	42.747	55.222	5.7278	29.055	42.752	55.908	5.7751	
	408호	30.545	44.939	58.054	6.0215	30.545	44.945	55.775	6.0713	
	409호	30.694	45.158	58.337	6.0509	30.694	45.164	59.062	6.1009	
	410호	41.040	60.379	78.000	8.0905	41.040	60.387	78.970	8.1573	
	411호	48.970	72.046	93.072	9.6538	48.970	72.056	94.229	9.7335	
	412호	48.450	71.281	92.084	9.5513	48.450	71.291	93.228	9.6301	
	413호	40.990	60.306	77.905	8.0806	40.990	60.314	78.873	8.1474	
	B동 101호	61.560	90.569	117.000	12.1357	61.560	90.581	118.454	12.2359	
	102호	50.150	73.782	95.315	9.8864	50.150	73.792	96.499	9.9680	
	103호	50.150	73.782	95.315	9.8864	50.150	73.792	96.499	9.9680	
	104호	48.013	70.638	91.253	9.4651	48.013	70.648	92.387	9.5433	
	105호	56.090	82.521	106.604	11.0574	56.090	82.532	107.929	11.1487	
	106호	65.732	96.707	124.930	12.9582	65.732	96.720	126.482	13.0652	
	107호	65.230	95.968	123.975	12.8592	65.230	95.981	125.516	12.9654	
	108호	50.546	74.232	95.896	9.9467	50.546	74.242	97.088	10.0289	
	109호	52.060	76.592	98.945	10.2629	52.060	76.603	100.174	10.3477	
	110호	33.210	48.860	63.119	6.5469	33.210	48.866	63.903	6.6010	
	111호	32.400	47.668	61.579	6.3872	32.400	47.674	62.344	6.4400	
	112호	30.780	45.284	58.500	6.0679	30.780	45.291	59.227	6.1180	
	B동 201호	66.898	98.422	127.146	13.1881	66.898	98.436	128.726	13.2969	
	202호	60.796	89.445	115.548	11.9851	60.796	89.457	116.984	12.0841	
	203호	56.430	83.021	107.250	11.1244	56.430	83.033	108.583	11.2163	
	204호	53.173	78.230	101.060	10.4824	53.173	78.240	102.316	10.5689	
	205호	56.806	83.575	107.965	11.1986	55.859	82.193	107.484	11.1028	
	206호	73.960	108.812	140.568	14.5802	73.960	108.827	142.314	14.7006	
	207호	48.600	71.502	92.369	9.5809	48.600	71.511	93.517	9.6599	
	208호	50.150	73.782	95.315	9.8864	50.150	73.792	96.499	9.9680	

	209호	50.150	73.782	95.315	9.8864	50.150	73.792	96.499	9.9680	
	210호	48.013	70.638	91.253	9.4651	48.013	70.648	92.387	9.5433	
	211호	56.090	82.521	106.604	11.0574	56.090	82.532	107.929	11.1487	
	212호	65.732	96.707	124.930	12.9582	65.732	96.720	126.482	13.0652	
	213호	65.230	95.968	123.975	12.8592	65.230	95.981	125.516	12.9654	
	214호	50.456	74.232	95.896	9.9467	50.456	74.242	97.088	10.0289	
	215호	50.456	74.232	95.896	9.9467	50.456	74.242	97.088	10.0289	
	216호	52.060	76.592	98.945	10.2629	52.060	76.603	100.174	10.3477	
	217호	111.780	164.454	212.448	22.0360	111.780	164.476	215.088	22.2179	
	218호	117.300	172.575	222.939	23.1242	117.300	172.599	225.710	23.3151	
	B동 301호	66.898	98.422	127.146	13.1881	66.898	98.436	128.726	13.2969	
	302호	60.796	89.445	115.548	11.9851	60.796	89.457	116.984	12.0841	
	303호	56.430	83.021	107.250	11.1244	56.430	83.033	108.583	11.2163	
	304호	53.173	78.230	101.060	10.4824	53.173	78.240	102.316	10.5689	
	305호	63.631	93.616	120.936	12.5440	62.411	91.833	120.092	12.4051	
	306호	85.140	125.260	161.816	16.7842	85.140	125.277	163.827	16.9228	
	307호	48.600	71.502	92.369	9.5809	48.600	71.511	93.517	9.6599	
	308호	50.150	73.782	95.315	9.8864	50.150	73.792	96.499	9.9680	
	309호	50.150	73.782	95.315	9.8864	50.150	73.792	96.499	9.9680	
	310호	48.013	70.638	91.253	9.4651	48.013	70.648	92.387	9.5433	
	311호	56.090	82.521	106.604	11.0574	56.090	82.532	107.929	11.1487	
	312호	65.732	96.707	124.930	12.9582	65.732	96.720	126.482	13.0652	
	313호	65.230	95.968	123.975	12.8592	65.230	95.981	125.516	12.9654	
	314호	50.456	74.232	95.896	9.9467	50.456	74.242	97.088	10.0289	
	315호	50.456	74.232	95.896	9.9467	50.456	74.242	97.088	10.0289	
	316호	52.060	76.592	98.945	10.2629	52.060	76.603	100.174	10.3477	
	317호	111.780	164.454	212.448	22.0360	111.780	164.476	215.088	22.2179	
	318호	117.300	172.575	222.939	23.1242	117.300	172.599	225.710	23.3151	

■ **목록표(설계변경)**

< 설계변경(2차) 목록표 [건축] >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관련도면	비 고
개요 및 면적산출	1. 주동 코아 면적 변경(102동, 103동) 2. 정화조 관리층 면적추가 3. 발전기실 면적증가(주거. 비주거) 4. 주차램프 선형조정 및 기타	⇒ 상부층 층차이구간 시공성확보 ⇒ 정화조 관리층 실구성(출입문설치) ⇒ 추가확보 필요 ⇒ 시공성개선	개요 면적산출표	-
배치	1. 102동 우측부 단지옹벽 선형조정	⇒ 토목공사 시공성확보	배치도	-
재료마감	1. 지하주차장 바닥마감 - 폴리우레아 → 에폭시코팅	⇒ 입주민 사용상 불편함 개선	재료마감표	-
단위세대	1. 59A형-세탁실 계획변경, 안방발코니 수전위치변경, 발코니2 덕트크기조정 2. 59B형-침실2 출입문 위치조정 세탁실 계획변경 3. 59C형-주방PD신설(코아부분) 주방부분 내부턱트 크기조정 4. 59C확장형-보일러 위치조정 5. 전타입 욕실 - UBR공법에서 건식벽체로 변경 - 천정고 H=2,230에서 H=2,200으로 조정	⇒ 편의성 개선 및 설비계획 변경 ⇒ 편의성 개선 및 설비계획 변경 ⇒ 편의성 개선 및 설비계획 변경 ⇒ 편의성 개선 및 설비계획 변경 ⇒ 시공성 개선 및 하자요인 개선 바닥마감 및 출입문 높이에 따른 내부마감 고려	단위세대평면도 주단면도	-
단위세대 창호도	1. 전타입 : 주방창 구간 난간높이 - 투시형 금속난간삭제 난간높이 H=1,100이상설치 2. 전타입 : 창호 - 분합문PD H=2,490에서 H=2,370으로 변경 - 욕실 ABS문 H=2,100에서 H=2,140으로 변경 - 59B, 59C, 59E 발코니2 PD문 H=2,100에서 H=2,200으로 변경	⇒ 편의성 개선 ⇒ 마감고려	단위세대평면도 주단면도 창호도	-
동평면도	1. 102동, 103동 - 상부층 층차이 구간 평면조정	⇒ 시공성 개선 및 안정성고려	동평면도	-
주단면도	1. 최상층 단열재 - 외부 단열재 삭제 및 내부단열재 THK100에서 THK200으로 변경	⇒ 시공성 개선 및 하자요인고려	주단면도	-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관련도면	비 고
지하층평면도	1. 주차램프-선형조정 2. 지하1층 출입차단기 위치변경 3. 지하6층 PIT(집수정부분)추가설치 4. 정화조 관리층 - 주거, 비주거분리 및 출입문설치 5. 발전기실 주거. 비주거 공간추가확보	⇒ 지상부 테라스 선형에 일치시공 (시공성개선) ⇒ 운용상에 필요성 고려 ⇒ 하자발생 최소화 고려 ⇒ 운용상에 필요성 고려 및 점검용이 ⇒ 운용상에 필요성 고려	지하주차장	
코어상세도	1. 102동, 103동 - 상부층 층차이 구간 평면조정 - 59C형-주방PD신설(코아부분)	⇒ 시공성 개선 및 안정성고려 설비계획 변경	코어상세도	
보육시설 작은도서관	1. 평면형태는 기존과 동일, 면적변경 - 보육시설 : 기존 225.865㎡ 변경 225.023㎡ 증감 -0.842㎡ - 작은도서관 : 기존 129.657㎡ 변경 131.202㎡ 증감 +1.545㎡	⇒ 102동, 103동 코어 이동으로 인한 면적변경 발생	보육시설 작은도서관	